제 2026-01호

행정대집행 계고서

법인명 : ㈜예[redacted] 귀하

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[redacted]

귀하 소유의 아래 토지에 대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제3항 및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2026년 9월 23일까지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결유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,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, 침출수 누출, 화재발생 우려, 쥐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, 위생 문제로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어,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13일까지 반드시 방치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9조제2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1873-7	생활폐기물	토지상의 폐기물 일체	영종구 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 (폐기물의 수집, 운반, 처리)

2026년 10월 29일

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인